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논산시의회 의장 



2020년 9월 21일

논산시의회규칙 제2호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전까지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 ③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서는 지역구 및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한다. 이 경우 사고가 있을 때란 사망,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여행, 휴가, 경조사 및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 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를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로 한다.

제3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이하 “시정질문”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답변 시 유사한 질문을 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한 경우에는 그 답변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 의원은 예외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 ③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충질문 시간에는 그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와 소요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시정질문 첫날 5일전(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질문일 4일 전(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 ⑥ 시장은 답변요지서를 답변전일(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까지 해당 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 ⑦ 의장은 제5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73조의3(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73조의2의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시장에 대한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해당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를 질문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⑤ 긴급현안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의원의 질문시간을 모두 합하여 6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간 3분의 1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 ⑦ 긴급현안질문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73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질문“은 “긴급현안질문“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의장 · 부의장의 선거)</p> <p>①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 ⑤ <생 략></p> <p><u>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u></p> <p>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p> <p>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p>	<p>제8조(의장 · 부의장의 선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전까지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p> <p>③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서는 지역구 및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p> <p>④ ~ ⑦(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 <p><u>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u></p> <p>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전자화일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p> <p>②~③ <생략></p>	<p>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p> <p>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한다. 이 경우 사고가 있을 때란 사망, 불신임, 퇴직 등으로 결위된 때와 여행, 휴가, 경조사 및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p> <p>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p> <p>③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p> <p>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 ----- ----- ----- -----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u>제37조의2(5분 자유발언)①~④<생략></u></p> <p><u><신설></u></p>	<p><u>제37조의2(5분 자유발언) ①~④ <현행과 같음></u></p> <p><u>⑤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u>제72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③ <생략></u></p> <p><u>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u></p>	<p><u>제72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③ <현행과 같음></u></p> <p><u><삭제></u></p>
<p><u><신설></u></p>	<p><u>제73조의2(시정질문)①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이하“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u></p> <p><u>②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u></p>

현행	개정안
	<p>에 대하여는 <u>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답변 시 유사한 질문을 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함께 답변한 경우에는 그 답변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 의원은 예외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u></p> <p>③ <u>본질문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충질문 시간에는 그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u></p> <p>④ <u>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⑤ <u>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와 소요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시정질문 첫날 5일전(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질문일 4일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u></p> <p>⑥ <u>시장은 답변요지서를 답변전일까지 해당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⑦ 의장은 제5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p> <p>제73조의3(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73조의2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시장에 대한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②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해당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p> <p>④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를 질문 24시간 전까지 시장에 보내야 한다.</p> <p>⑤ 긴급현안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의원의 질문시간을 모두 합</p>

현행	개정안
	<p><u>하여 6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간 3분의 1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u></p> <p>⑥ <u>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⑦ <u>긴급현안질문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73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질문"은 "긴급현안질문"으로 본다.</u></p>